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신청 기간 2024. 5. 29.~ 예산소진시까지(수시모집)

◆ 신청 대상 ① 돌봄 필요 청년(19~39세) · 돌봄 필요 중장년(40~64세)

※출생연도 기준

질병, 장애,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필요성이 있고,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운 돌봄필요 청·중장년 또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② 가족돌봄청년(13~39세)

질병, 중증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 지원 내용

서비스구분		대상자	서비스 내용
기본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재가돌봄 :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 가 사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병원 동행 서비스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특화	심리 지원 서비스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월 4회(주1회)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① 돌봄필요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월 8회(주2회)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서비스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월 4회(주 1회)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체·마음건강 프로그램, 푸드테라피 등
	전북청년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 가사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특화형)	-	2개 이용

※ A~D형의 특화 서비스 이용 개수는 최대 이용 한도를 의미하므로, 특화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가능

※ C형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며,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 점수가 '상'(12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문의
- ▶ 신청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유형별 증빙서류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	① 돌봄 필요성	② 돌봄자 부재	③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에 대한 증빙서류
돌봄 필요청·중장년 ① 돌봄 필요성, ② 돌봄자 부재 모두 증빙 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관련함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일상돌봄서비스 공공·민간 연계 동의서 함께 제출 필요) (3)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 판정결과서 (4)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증빙(주민등록등본)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임금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재직, 소득 모두 증빙) : (재직관련)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등 재직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증빙자료 중 1부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중 1부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일상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산정특례(중증, 희귀질환)등록신청서 등 입원(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만 인정)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 1 (2개월이상 치료기간 명시 필요)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① 돌봄 필요성, ③ 가족돌봄 청년 모두 증빙 필요	▼ 아래 중 1개 (상세내용 상동)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등본(필수) (2) 가족돌봄청년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경제활동 증빙서류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 ※ 타돌봄서비스(장기요양, 활동지원, 가사간병 등) 대상자는 기본서비스 이용 대상 제외, D형(특화형)만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없음(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중위소득 160% 이상은 본인부담 100%)
- ※ 가족돌봄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기준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으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